

## 충청북도지역홍보대책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

제안이유

'92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홍보상임위원의 인상된 월액수당 및 정근수당 지급

주요골자

- 상임위원의 수당을 '92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월 531,000원으로 조정하고 월액수당의 100%에 해당되는 정근수당을 지급(조례 제9조)

근거법령(지침) : '92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

예산현황 : '92상임위원 보수 예산확보 년 9,342천원

---

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